

위생상태 및 안전관리 세부기준 안내

| 순번 | 구분 | 세부기준 |
|----|------------------|---|
| 1 | 위생복 상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체 흰색, 손목까지 오는 긴소매 -조리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(화상 등) 예방 및 식품위생(체모 유입방지, 오염도 확인 등) 관리를 위한 기준 적용 -조리과정에서 편의를 위해 소매를 접어 작업하는 것은 허용 -부직포, 비닐 등 화재에 취약한 재질이 아닐 것, 팔토시는 긴팔로 불인정 • 상의 여밈은 위생복에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벨크로(일명 찍찍이), 단추 등의 크기, 색상, 모양, 재질은 제한하지 않음(단, 핀 등 별도 부착한 금속성은 제외) |
| 2 | 위생복 하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색상·재질 무관, 안전과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발목까지 오는 긴바지 -조리기구 낙하, 화상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준 적용 |
| 3 | 위생모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체 흰색, 빈틈이 없고 바느질 마감처리가 되어 있는 일반 조리장에서 통용되는 위생모 (모자의 크기, 길이, 모양, 재질(면·부직포 등)은 무관) |
| 4 | 앞치마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체 흰색, 무릎아래까지 덮이는 길이 -상하일체형(목끈형) 가능, 부직포·비닐 등 화재에 취약한 재질이 아닐 것 |
| 5 | 마스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침액을 통한 위생상의 위해 방지용으로 종류는 제한하지 않음 (단,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간에는 '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' 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) |
| 6 | 위생화 (작업화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색상 무관, 굽이 높지 않고 발가락·발등·발뒤꿈치가 덮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깨끗한 운동화 형태 |
| 7 | 장신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일체의 개인용 장신구 착용 금지(단, 위생모 고정을 위한 머리핀 허용) |
| 8 | 두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단정하고 청결할 것, 머리카락이 길 경우 흘러내리지 않도록 머리망을 착용하거나 묶을 것 |
| 9 | 손 / 손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손에 상처가 없어야하나, 상처가 있을 경우 보이지 않도록 할 것 (시험위원 확인 하에 추가 조치 가능) • 손톱은 길지 않고 청결하며 매니큐어, 인조손톱 등을 부착하지 않을 것 |
| 10 | 폐식용유 처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용한 폐식용유는 시험위원이 지시하는 적재장소에 처리할 것 |
| 11 | 교차오염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칼, 도마 등 조리기구 구분 사용은 세척으로 대신하여 예방할 것 • 조리기구에 이물질(예, 테이프)을 부착하지 않을 것 |
| 12 | 위생관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재료, 조리기구 등 조리에 사용되는 모든 것은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, 조리용으로 적합한 것일 것 |
| 13 | 안전사고 발생 처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칼 사용(손 빔)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하여야하며, 응급조치에도 지혈이 되지 않을 경우 시험진행 불가 |
| 14 | 눈금표시 조리도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눈금표시된 조리기구 사용 허용 (실격 처리되지 않음, 2022년부터 적용) (단, 눈금표시에 재어가며 재료를 써는 조리작업은 조리기술 및 숙련도 평가에 반영) |
| 15 | 부정 방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위생복, 조리기구 등 시험장내 모든 개인물품에는 수험자의 소속 및 성명 등의 표식이 없을 것 (위생복의 개인 표식 제거는 테이프로 부착 가능) |
| 16 | 테이프사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위생복 상의, 앞치마, 위생모의 소속 및 성명을 가리는 용도로만 허용 |

※ 위 내용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평가(심사) 매뉴얼, 위생등급 가이드라인 평가 기준 및 시행상의 운영사항을 참고하여 작성된 기준입니다.

위생상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채점기준 안내

| 위생 및 안전 상태 | 채점기준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위생복(상/하의), 위생모, 앞치마, 마스크 중 한 가지라도 미착용한 경우 2. 평상복(흰티셔츠, 와이셔츠), 패션모자(흰털모자, 비니, 야구모자) 등 기준을 벗어난 위생복장을 착용한 경우 | 실격 (채점대상 제외) |
| 3. 위생복(상/하의), 위생모, 앞치마, 마스크를 착용하였더라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무늬가 있거나 유색의 위생복 상의·위생모·앞치마를 착용한 경우 • 흰색의 위생복 상의·앞치마를 착용하였더라도 부직포, 비닐 등 화재에 취약한 재질의 복장을 착용한 경우 • 팔꿈치가 덮이지 않는 짧은 팔의 위생복을 착용한 경우 • 위생복 하의의 색상, 재질은 무관하나 짧은 바지, 통이 넓은 힙합스타일 바지, 타이츠, 치마 등 안전과 작업에 방해가 되는 복장을 착용한 경우 • 위생모가 뚫려있어 머리카락이 보이거나, 수건 등으로 감싸 바느질 마감 처리가 되어있지 않고 풀어지기 쉬워 일반 조리장용으로 부적합한 경우 4. 이물질(예, 테이프) 부착 등 식품위생에 위배되는 조리기구를 사용한 경우 | ‘위생상태 및 안전관리’ 점수 전체 0점 |
| 5. 위생복(상/하의), 위생모, 앞치마, 마스크를 착용하였더라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위생복 상의가 팔꿈치를 덮기는 하나 손목까지 오는 긴소매가 아닌 위생복(팔토시 착용은 긴소매로 불인정), 실험복 형태의 긴가운, 핀 등 금속을 별도 부착한 위생복을 착용하여 세부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• 테두리선, 칼라, 위생모 짧은 창 등 일부 유색의 위생복 상의·위생모·앞치마를 착용한 경우 (테이프 부착 불인정) • 위생복 하의가 발목까지 오지 않는 8부바지 • 위생복(상/하의), 위생모, 앞치마, 마스크에 수험자의 소속 및 성명을 테이프 등으로 가리지 않았을 경우 6. 위생화(작업화), 장신구, 두발, 손/손톱, 폐식용유 처리, 안전사고 발생 처리 등 ‘위생상태 및 안전관리 세부기준’ 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7. ‘위생상태 및 안전관리 세부기준’ 이외에 위생과 안전을 저해하는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 | ‘위생상태 및 안전관리’ 점수 일부 감점 |
| ※ 위 기준에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인 개인위생, 식품위생, 주방위생, 안전관리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감점처리 될 수 있습니다. ※ 수도자의 경우 제복 + 위생복 상의/하의, 위생모, 앞치마, 마스크 착용 허용 | |